내부제보실천운동 2023년 제7회 정기총회 (서면총회)

■ 일시 : 2023년 3월 18일~24일

■ 장소 : 서면총회



차 례

의장인사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상임대표 인사	
전차 회의록 승인	5
상정의안	19
제1호 의안 : 2022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20
제2호 의안 :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22
제3호 의안 :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28
제4호 의안 : 기타 안건	33
부록	35
정관	36
회원명단	45

전차 회의록 승인



2022년 제6회 (서면)총회 회의록

일시 : 2022년 4월 9일(토)~4월 17일(일)

장소 : 온라인 서면으로 진행

내부제보실천운동

2022년도 제6회 내부제보실천운동 총회 회의록

0.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22 제 6회 정기총회를 서면총회로 대체 진행을 3월 28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 아래와 같이 일정과 방법을 결정하여 2022년 제6회 총회를 온라인 서면총회로 진행한다.

◆ 서면 총회 일정

- 3월 29일(화)~31일(목) : 총회 공지 및 자료집 발송(메일/문자/우편 등)
- 4월 1일(금)~4월 8일(금) : 안건관련 의견 수렴
- 4월 9일(토)~4월 17일(일) : 온라인 서면 총회 진행
- ◆ 온라인 서면 총회 방법_구글독스 구글독스 링크를 통해 각 안건에 대한 가부 의결 (구글독스 사용이 어려운 회원들은 위임 가능)

◆ 의 안:

제1호 의안. 2021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4기 대표단 및 운영위원, 고문, 감사, 간사 선출의 건
제4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기타 안건

◆ 자료집

각 섹션마다 안건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전체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bal1004.com/new/write_view.php?table=news&idx=89

◆ 참여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총회 의결에 참여 https://docs.google.com/forms/d/1ev0J3doVxP-MisthU-V6p6bXDcxsC_FatsG5cUhtc_I/edit

1. 일시 : 2022년 4월 9일(토)~4월 17일(일)

2. 장소 : 온라인 서면으로 진행

3. 참가회원 : 80명중 43명 (참여 32명, 위임 11명, 불참 37명)

4. 상임공동대표 인사 : 온라인 서면 대체

5. 의장 인사 : 온라인 서면 대체

6. 성원확인 및 회원점명 : 온라인 서면 대체

7. 개회선언 : 온라인 서면 대체

8. 서기지정 : 온라인 서면 대체

9. 전차 회의록 승인

서면 투표 결과

찬성	반대	기권
32	0	0

10. 의안 채택

운영위 결정에 따라 3월 29~31일 중 총회 공지 및 자료집 발송(메일/문자/우편 등)하여, 4월 1일~4월 8일 중 안건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의안을 상정 하다.

제1호 의안. 2021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4기 대표단 및 운영위원, 고문, 감사, 간사 선출의 건

제4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기타 안건

11. 부의안건 심의

가. 2021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 아래 서면 투표 결과 참여회원 중 찬성 32, 반대 0, 기권 0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서면 투표 결과

찬성	반대	기권
32	0	0

감사보고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의 2021년도 활동과 업적을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총평

- (1) 2021년도 지출은 계획된 사업 활동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입 지출한 보고서가 홈페이지를 통해 다달이 정확하게 게시, 보고가 잘 됐음을 확인했습니다.
- (2)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전체적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편에 맞는 지출과 사업진행으로 적절하게 극복하였습니다. 단체 회원 및 회비 증대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3) 운영위원회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추후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며, 단체의 조직적 역량 강화를 위해 대표단과 운영위원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제보자 지원 활동이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일정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남기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체 사업과 조직 전반이 정체되어 있어 향후 조직적 확대와 재원 마련이 절실합니다.

2. 조직·재정

- (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영향 및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단체 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단체 회원의 증가 속도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익제보 지원의 성과로 인한 시의적절한 후원금 조직은 단체 운영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비 재정이 작년에 비해 감소한바 향후 회원 및 회비수입 증가를 위한 임원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 (2) 2년 연속하여 조직사업과 단체 내부 워크숍 등이 원만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조직적 결속력과 회원 간 유대감 형성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 (3) 운영위원회가 1차례만 진행된 점은 조직 운영 차원에서 부족했던 부분이었으나 온라인 회의를 상시적으로 진행한 점은 적절하게 평가합니다. 단체 대표단과 운영위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이며 코로나19 국면에 대한 적응을 통해 향후 다양한 사업 기획이 필요합니다. 단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익제보자상담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회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회원과 재원의 확보 노력이 요청됩니다.

2022년 4월 4일

내부제보실천운동 감사 이석만

나.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아래 서면 투표 결과 참여회원 중 찬성 32, 반대 0, 기권 0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서면 투표 결과

찬성	반대	기권
32	0	0

1

2021년 사업보고

□ 총평

- 내부제보실천운동 3기 대표단 및 운영위가 안정화됨에 따라 논의와 소통 구조가 원만했음. 운영위 내부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했음. 다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운영위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대면 소통의 아쉬움이 남음.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규모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려웠고, 계획했던 사업 전반이 취소되어 적극적인 활동이 위축되었음. 그럼에도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제보자들에게 법률적 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소통을 적절히 하였음. 시의 적절한 내부고발의 이슈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고, 다양한 층위의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지원의 폭을 확장하였음.
- 단체와 관계를 지속해온 내부고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내부고발자들이 단체와 함께 하였음. 타 단체와도 연대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였으며, 다양한 형태로 제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 였음. 실제 제보자 지원으로 인해 여러 사회적 파장이 있었고,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어졌음.
- 다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직접적인 제보자 지원이 어려웠음. 사업 전반이 실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회원 간의 유대감이 크게 만들어지지 못했음. 또한 여전히 절대적인 단체 역량이 부족하며, 단체가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할 과제로 인식 됨.
- 회원의 증감 폭이 작년 수준으로 유지 되었으나, 코로나 사태 등으로 회비는 납부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적절한 시기에 회원들의 후원금과 상황에 맞는 재정운영으로 큰 어려움 없이 단체를 운영하였음.
- 계속 반복되는 재정적 어려움과 조직 확장 등이 이번에도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며, 대표단과 운영위의 체계를 개편 및 강화하여, 내부고발자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주요 사업성과

- 안종훈 교사 학교 복귀 촉구 대응
- 연합뉴스 공익제보자 부당징계관련 대응
- 성남시장 은수미 비리 공익제보자 지원
- 기아자동차 판매원 부당해고 탄원서
- 조동규 교사 공익제보 활동 지원
- 주세준 경찰 공익제보 탄압 대응
-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익제보 상담
- 제주대학병원 공익제보자 탄압 대응
- 최홍범 회원 공익제보 탄압 관련 지원
- 포스틸 공익제보 상담
- 공익신고법 토론회 개최 및 제4회 이문옥 밝은사회상 시상(22년 1월 15일)

□ 한계

- 제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제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 단체 차원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의 전문성과 전문적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함.
- 조직 확장과 재정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마련이 필요함.

2 2021년도 결산서

○ 결산(2021.1.1. ~ 12.31.)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비고	관	항	목	금액	비고
이월금	이월금	371,891				임대료	350,000	
7120	920	371,031			일반	CMS 사용료	660,000	
회비수입	정회원회비	9,219,160		경	관리비	통신/발송	415,490	
4-11-6	0464-1	3,213,100		상		소모품비/교통비	764,390	
후원수입	후원금	2,800,000		비	행사비	행사,기자회견 등	0	
사업수입	행사수입	0			기타	업무추진비	354,300	
사업무법	경시구립	U				소계	2,544,180	
기타수입	결산이자 등	545			내부제보	상담센터	347,300	
/14TB	글인에서 중	343		사	지원	이문옥밝은사회상	172,550	
				업	회의비	총회	36,400	
					최되미	운영위	0	
				비	워크샵	회원워크샵	0	
						소계	556,250	
				인	급여	활동가급여	7,706,000	
				건 비		소계	7,706,000	
				예	예비비	경조비	147,500	
				비		기타(세금,수수료 등)	87,630	
				비	비 소계		235,130	
	층 수입	12,391,59	96		총 지출		11,041,	560
				2022년 1월 잔액 (수입-지출)			1,410,0)36

다. 4기 대표단, 감사 선출 및 상임고문단 추대의 건 : 아래 서면 투표 결과 참여회원 중 찬성 32, 반대 0, 기권 0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서면 투표 결과

찬성	반대	기권
32	0	0

4기 상임대표 및 감사 추천 안(가나다 순)

상임대표(3인)

김형남(변호사, 現 상임대표) 박헌영(국정농단 내부제보자, 現 상임대표) 백찬홍(내부제보실천운동 現 상임고문)

감사(1인) 안천식(변호사) **최광일**(JTBC PD)

4기 상임고문단 추대 건(가나다 순)

이지문(내부제보실천운동 現 상임고문)

4기 활동간사 선임 및 사무처 구성의 건

4기 활동 간사 : 김세울

영상미디어 팀장 : 안디도

비상임 간사 : 안드레

라.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아래 서면 투표 결과 참여회원 중 찬성 32, 반대 0, 기권 0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서면 투표 결과

찬성	반대	기권
32	0	0

1

2022년 내부제보 사업계획(안)

□ 정세 및 과제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규모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제는 코로 나 국면에 대한 적응과 이에 대한 맞춤형 사업 기획을 통해 단체 운영의 활력을 유지해 야 함. 대선과 지선이 있는 국면에 따라 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함.
- 21년에 전반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웠음에도 제보자 지원 과정에서 여러 성과를 남김. 단체의 위상이 점차 확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익제보 상담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단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 구축이 필요. 더불어 매년 유보되었던 단체 홍보사업을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새로운 경로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단체 대표단과 운영위원, 간사의 전반적인 개편 국면을 맞이하여, 보다 실질적인 내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
- 단체 결성 6년 차를 맞이하여, 조직의 질적,양적 확장이 필요. 신규 회원을 비롯하여 회원 간 유대감과 연대관계 구축이 필요.

□ 사업목표

- 내부고발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친목 및 연대 사업 확장을 통해 회원 간 유대관계 형성.
- 타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연대관계 구축을 통한 공동 사업 진행.
- 유튜브 채널 개설을 통한 제보활동 지원과 단체 홍보 사업 진행.
- 제보 활동에 대한 적극적 연대와 실질적 성과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 역점사업

- 제보자 상담지원 :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체계 마련.
- 연대 사업 강화 :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었던 내부 워크샵 및 연대 사업 강화.
- 홍보 사업 기획 : 유튜브 채널 개설을 통한 단체 홍보 및 제보활동 알리기 사업 기획 및 진행.
- 단체 확대 사업 : 단체 회원 증대 및 규모 확장을 위한 제보자 소통 사업.

□ 기타사업

- 조직사업 : 1년에 최소 1회의 회원 워크샵 진행.
- 홍보사업 :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단체 및 단체 활동 홍보. 유튜브 채널 개설
- 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사업 기획 및 진행.
- 캠페인 사업 : 정세에 따라 내부고발자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 연대 사업 : 타 시민단체 및 공익제보자들과의 연대관계 구축.
- 공익제보자 권익 침해 사례조사 및 대응.

□ 기대효과

- 내부고발자 권익 증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
- 단체의 내부적 조직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 활동의 구심점 마련
-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제보활동 촉진
- □ 사업예산 총액 : 총액 20,410 천원

□ 세부사업계획

1) 회 의

- -. 총회개최(연 1회)
- -. 운영위원회(분기별 1~2회)

2) 제보자 지원활동

-.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 형성 및 네트워크 마련으로 제보자 지원활동의 전문성과 체계성 강화

3) 조직 활동

-. 회원 워크샵 : 회원 워크샵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소통창구 마련

4) 홍보활동

- -. SNS 활용 :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
- -. 캠페인 진행 : 공익제보자 인식개선 및 신고절차 매뉴얼 등
- -. 유튜브 채널 개설 : 제보활동 알리기, 다큐 등을 영상으로 담은 단체 유튜브 운영

내부제보실천운동 유튜브 운영 계획안

1] 개요

1) 채널명

- 내부제보TV

2) 기획의도

- 세상의 변화를 위해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흔히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며 환호한다. 하지만 주목받지 못한 채 외로운 싸움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내부고발자'들이다.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개인은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 가며 혼자서 거대한 적과 싸워야한다. 이러한 공익제보자들의 삶을 조명하고 공익제보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뤄낼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한다.

3) 목표

- 1. 공익제보자들의 삶 들여보기
- 공익제보자의 험난한 삶과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도움과 참여를 끌어낸다.
- 공익제보자에 대한 탐사 보도를 통해 부당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대중들에게 알린다.
- 2. 공익제보와 함께하기
- 세상을 바꾼 의미 있는 공익제보를 소개함으로써 공익제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꾼다.
- 제보 활동의 노하우와 방법, 지원방안들을 소개함으로써 제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 3. 내부제보실천운동을 알려보기
- 내부제보실천운동의 설립 목적과 의미, 목표 등을 영상을 통해 공유한다.
- 공익제보자들을 위한 단체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내부제보실천운동을 대중들에게 알린다.

4) 컨셉(톤&매너)

- 1. 사건의 특성상 진지함을 유지하지만 지루해지지 않도록 대중성 확보
- 2. 깔끔하고 트렌디한 디자인 활용
- 3. 내부제보실천운동의 메인 컬러인 검정과 노랑을 활용
- 4. 디자인 예시)







2] 콘텐츠

1) 위클리 콘텐츠

- (가제) 세상을 바꾼 공익제보들(세바공),

1. 상세내용

▶ 설명 : 화제성과 중요성이 높은 공익제보 사건을 소개 및 설명하는 콘텐츠▶ 형태 : 나레이션 또는 출연자의 설명과 함께 그래픽, 영상 자료 등을 활용

▶ 분량 : 약 2~3분▶ 일정 : 주 1회

2. 소재

- 사건의 중요성이나 문제의 심각성이 높지만,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던 소재
-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 중 공익제보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소재
- 3. 예시
- 탈세를 신고했는데 처벌을 받는 나라가 있다? (롯데칠성음료 가상판매 세금탈루 공익제보자 김도형씨 이야기)
-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어떻게 밝혀졌을까?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한 B씨 이야기)

2) 탐사 보도 콘텐츠

- (가제) 마이너리티 리포트 내부고발 사건의 진실
- 1. 상세내용
 - ▶ 설명 : 단체에 제보된 내부고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탐사 보도 콘텐츠
 - ▶ 형태 : 제보자의 인터뷰와 가해자에 대한 취재로 구성된 탐사 보도 및 다큐멘터리 형태
 - ▶ 분량 : 약 20분▶ 일정 : 분기별 1회
- 2. 소재
- 단체에 최근 제보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중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소재
- 언론이 주목하지 않지만,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소재
- 제보자가 탐사 보도를 원하는 경우
- 3. 예시
- 뉴스타파 : 협성대 총장님의 '보이지 않는 손' (https://youtu.be/XY-QL-gy-nU)
- PD수첩: 내부고발자, 그들의 외로운 고백 (https://youtu.be/xB9V4hJVOds)

3) 인터뷰 콘텐츠

- (가제) 제보자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 1. 상세내용
 - ▶ 설명 : 내부제보자 또는 단체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삶과 내부제보 사건 소개
 - ▶ 형태 : 인물 인터뷰와 인서트, 그래픽으로 구성
 - ▶ 분량 : 3~5분▶ 일정 : 월 1회
- 2. 소재
- 기존에 단체에서 상담을 진행했던 회원 중 선정
- 단체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내부제보실천운동에 대한 소개 및 홍보
- 제부 내용과 관련된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부제보 관련 팁 제공
- 3. 예시
- 호루라기재단[호루라기 시즌3:My Story]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편

(https://youtu.be/VthmiBGWhec)

- 진국월드 : "어린 게 뭘 안다고 이렇게 나대?"라는 말도 듣죠 | 진국인 박혜민, 곽민해 (https://youtu.be/v80CPk6lucE)

5) 연대사업

- -. 내부제보자 투쟁현장 상시연대 : 현재 진행 중인 투쟁현장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연 대활동 전개
 - -. 타 시민단체와 연대관계 구축 : 연대관계 구축을 통해 공동사업 모색

6) 단체 확대 사업

-. 단체 회원 증대 및 규모 확장을 위한 제보자 소통 사업

2

2022년도 내부제보실천운동 예산(안)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비고	관	항	목	금액	비고
회비수 입	정회원회비	11,000,000				제보자지원	800,000	연대사업 포함
후원수 입	후원금	6,000,000			내부제 보지원	상담지원	800,000	
사업수	행사수입	2,000,000		사		이문옥밝은사회 상	4,000,000	
입	3·11 B	2,000,000		업 비	회의비	총회	100,000	온라인 예상
전년도		1,410,036				운영위원회	400,000	
이월		1,110,030			워크샵	회원워크샵	800,000	
					홍보비	홍보기획비	300,000	
						유튜브 영상	1,200,000	
						소계 CMS 사용료	8,400,000	
					일반	통신/발송비	660,000 600,000	 우편 등
				경	_드 ᆫ 관리비	소모품비	400,000	72.6
				상	L: -I -I	교통비	400,000	
				비	행사비	송년회	2,000,000	
				•	기타	업무추진비	300,000	
						소계	4,360,000	
				인		활동가급여	7,200,000	60만×12
						용역급여	-	
				건	인건비	퇴직급여	-	
				비		4대보험	-	
						후생기타 소계	7 200 000	
				예	경조비	조세	7,200,000	
					기타		300,000	스스크 <u>드</u>
				비	7157		150,036	수수료 등
				비		소계	450,036	
	수입	20,410,036				지출	20,410,036	

마. 기타 안건 : 서면총회 결과 기타 안건 없음을 확인하다.

바. 추가 의견 : 서면총회 결과 다양한 격려와 감사 인사를 확인하다.

12. 폐회선언 : 4월 17일 자정을 기해 온라인 서면 총회를 폐회하다.

총희의 의사 진행의 경과와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

날인하다.

2022년 4월 18일

내부제보실천운동

의장: 박헌영(인) 서기: 안드레(일)





상정의안



제 1호 의안 2022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의결 주문: 2022년 종합 감사 보고서를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 정관 제 15조 8항

감사보고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의 2022년도 활동과 업적을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총평

- (1) 2022년도 지출은 계획된 사업 활동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입 및 지출 보고 또한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 (2)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형편에 맞게 적절한 지춬 및 사업 진행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였습 니다. 하지만 수입 감소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체 회원 모집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 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제보실천운동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단체 회원 모 집과 회비 증대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3) 4기 대표단 및 감사, 상임 고문단 출범 이후 조직적인 안정화가 일정부분 이뤄졌으나 단체 사업 활성화와 조직 확대, 홍보 강화 및 재원 마련 등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보자 지원 활동 을 다방면으로 진행했으며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2. 조직·재정

- (1) 회비 납부 회원이 소폭 감소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의적절한 후원금은 단체 운영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다소 어려운 만큼 회 원과 회비 수입 증가를 위한 임원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 (2)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해서 조직사업과 단체 내부 워크숍 등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회원 간 커뮤니케이션(단톡방 개설)등을 통해 조직의 단결성을 담보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3) 코로나19가 점차 해소되고 있는 더 많은 모임과 활동이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공익제보자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캠페인과 회원 참여와 유대감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 입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새로운 회원 모집에 의미 있는 활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안천식 *OL 31 1*h 내부제보실천운동 감사

제 2호 의안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의결 주문 : 2022년 사업 보고 및 결산을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정관 제 15조 3항

1

2022년 사업보고

□ 총평

- 내부제보실천운동 4기 대표단 및 운영위의 안정적인 활동으로 2022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운영위원이 선출됨에 따라 폭넓은 분야의 공익제보를 지원할 수 있었으며 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음. 내부 직원들이 교체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음.
- 20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어 사업 진행 및 적극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 하반기부터는 제보자들에 대한 상담과 법률적, 심리적 지원이 전개되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줄어든 기존 회원들 간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 또한 이지문중위 30주년 행사, 기자회견, 이문옥 밝은사회상 시상식 개최 등 코로나 사태 이후 진행하기 어려웠던 대면 활동들을 전개함.
- 다양한 내부고발자들이 단체에 가입하였고, 함께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청렴사회민관협 의회 등 공공기관 활동을 지속했으며, 타 단체와의 연대를 끈끈하게 유지했음. 기자회견, 집회 참 가 등으로 제보자들을 지원했으며, 경기도 주민감사청구를 청구해 경기도가 광주시를 감사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룬 경우도 있었음.
- 다만, 코로나 사태 여파로 사업 전반이 활기를 띄지 못했고, 회원 간의 유대감이 약화되었음. 2022년에 계획했던 유튜브 채널 운영 사업이 실무진의 역량 부족 및 단체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으나 2023년에는 영상 기록물 관련 사업을 전개 및 지원할 예정임. 이외에도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필요함.
- 전체 회원 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코로나 사태 및 국내외 정세로 인해 회비 납부 비율이 계속 해서 감소하고 있음. 하지만 회원들의 특별후원금과 탄력적인 재정운영으로 큰 어려움 없이 단체를 운영할 수 있었음.
- 재정적 어려움과 조직 확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가 중요한 과제로 여겨짐. 체계 개편 및 강화,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단체의 내실을 다지고, 내부고발자 지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주요 사업성과

-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가 여는 시민 정치학교 특강 주관
- 나눔의 집 불법운영 관련 주민감사청구 지원 및 보도자료 배포

-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간 연대 및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의 집 역사관 탐방
- 이지문 중위 양심선언 30주년 행사 공동 개최
- 진각종 고위직 승려에 의한 성추행 피해자 보호 촉구 기자회견
- 감사원의 권익위 표적 감사 규탄 및 독립성 보장 촉구 성명 발표
- 2022년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활동
- 제 5회 이문옥밝은사회상 시상(23년 1월 14일)

□ 한계

- 제보자의 일상 복귀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함.
- 신규 제보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을 위한 전문성과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함.
- 신규 사업을 위한 재정마련 및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함.

내부제보실천운동 2022 주요 활동보고

활동	등내용		나눔의 집 주민감사 청구	연대 및 참	·여
일시	04.19	장소	경기도청 정문 앞	참여인원	약 12명





활동	동내용	O	지문 중위 양심선언 30주년	행사 공동	개최
일시	05.14	장소	흥사단 3층 강당	참여인원	약 50명





활동내	용	진각종	승려에 의한 성추행 피해지	사 보호 촉 구	그 기자회견
일시	07.22	장소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참여인원	약 5명





활동	등내용				
일시	23.01.14	장소	우리함께빌딩 기룬	참여인원	약 30명





2 2022년도 결산서

○ 결산(2022.1.1. ~ 12.31.)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비고	관	항	목	금액	비고	
이외그	이월금	1 410 026					CMS 사용료	660,000	
이월금	이 끌 n	1,410,036			상	통신/발송	358,200		
	정회원회비	9,483,285				소모품비	170,800		
회비수입				경		교통비	313,610		
후원수입	후원금	7,100,000		비		행사,기자회견 등	44,000		
7278	T & C	7,100,000			기타	업무추진비	307,520		
사업수입	행사수입	0				소계	1,854,130		
					내부제보	상담센터	55,200		
기타수입	결산이자 등	2,097			지원	이문옥밝은사회상	4,184,200		
			사 어	업 회의비	총회	0			
			변 비 -		운영위	28,000			
				이지문 30주년	행사비	904,000			
				소계		5,171,400			
			인 건	급여	활동가급여	3,000,500			
				비	소계		3,000,500		
			예 비	예비비	경조비	249,500			
					기타(세금,수수료 등)	6,400			
						소계	255,900		
총 수입 17,995,418			총 지출		10,281,930				
				20	2022년 1월 잔액 (수입-지출)		7,713,488		

제 3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 주문 : 2023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정관 제 15조 3항, 제 15조 5항

1

2023년 내부제보 사업계획(안)

□ 정세 및 과제

-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위축되어 있던 단체의 활력이 될 수 있는 홍보 사업과 회원들 간의 유대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야 함.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와 정세로 인해 제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함. 이를 위한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단체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단체 홍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함. 22년에 진행하지 못했던 유튜브 채널 운영과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함. 더불어 영상 기록물사업을 통해 제보자들에 대한 유대감 형성과 내부고발에 대한 중요성 재고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단체 캐릭터 제작 및 로고 리뉴얼을 통해 단체의 이미지 쇄신과 친밀감형상 도모가 필요.
- 제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각 운영위원의 전문성을 살려 공익제보의 분야에 맞게끔 맞춤형 상담을 지원.
- 보다 실질적인 내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 또한 유대감 형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 조직의 질적, 양적 확장과 함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감에 따라 대면 활동을 통한 회원간 연대 관계 형성이 필요.

□ 사업목표

- 내부고발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친목 및 연대 사업 확장을 통해 회원 간 유대관계 형성.
- 유튜브 채널 및 SNS를 통한 단체 홍보 사업 진행.
-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 연대와 지원.

□ 역점 사업

- 제보자 상담지원 :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제보자 상담 및 지원.
- 연대 사업 : 코로나 사태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내부 워크샵 진행 및 연대 사업 강화.
- 홍보 사업 :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지속적인 SNS 활동을 통해 단체 홍보.
- 단체 확대 사업 : 국가 및 지자체 등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 공모.

□ 기타 사업

- 조직 사업 : 연중 1회 회원 워크샵을 진행, SNS와 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원 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 캠페인 사업: 제보자들의 삶을 기록하고 공감 및 동행하는 영상 기록물 제작.
- 타 시민단체 및 공익제보자들과의 연대관계 구축.
- 제보자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 모색.

□ 기대효과

- 내부고발자 권익 증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
- 단체의 내부적 조직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 활동의 구심점 마련.
- 단체 내부 연대 지속 및 보호가 필요한 내부자들에 대한 지원 활성화.
- 제보자들의 삶을 기록하고 함께함으로써 연대 강화.

□ 세부사업계획

- 1) 회의
- 총회개최(연 1회)
- 운영위원회(분기별 1~2회)

2) 제보자 지원활동

-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 형성 및 네트워크 마련으로 제보자 지원활동의 전 문성과 체계성 강화.

3) 조직 활동

- 회원 워크샵 : 연중 1회 이상 회원 워크샵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소통창구 마련.

4) 홍보활동

- SNS 활용 :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
- 캠페인 진행: 제보자의 삶을 기록하는 영상 제작, 네이버 해피빈 사업으로 제작비 충원
- 유튜브 채널 운영 : 인터뷰 영상으로 회원 소식 공유, 단체 홍보 영상 제작.

5) 연대사업

- 내부제보자 투쟁현장 상시연대 : 현재 진행 중인 투쟁현장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연대활 동 전개.
- 행사 참여 및 공동사업 등을 통해 타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연대 관계 유지.

□ 신규 사업 계획

- 1) 유튜브 채널 운영.
- 2) 제보자 삶을 기록하는 영상 제작과 이를 위한 네이버 해피빈 사업 시도.
- 3) 단체 캐릭터 제작 및 활용.
- 예산 총액 : 총액 25,713 천원

2

2023년도 내부제보실천운동 예산(안)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비고	관	항	목	금액	비고
회비수입	정회원회비	11,000,000		사 -		제보자지원	1,000,000	연대사업 포함
후원수입	후원금	6,000,000			내부제보 지원	상담지원	1,000,000	
사업수입	행사수입	1,000,000			시원	이문옥밝은사회 상	4,000,000	
				업	회의비	총회	100,000	온라인 진행시
전년도		7,713,488		비		운영위원회	200,000	
이월		1,113,400			워크샵	회원워크샵	1,000,000	
					홍보비	홍보기획비	200,000	
						유튜브 영상	2,500,000	
						소계	10,000,000	
					OLHI	CMS 사용료	660,000	
					일반 경 관리비 상 비	통신/발송비	500,000	우편 등
						소모품비	500,000	
				비		교통비	400,000	
				•	행사비	송년회	2,000,000	
			기타	업무추진비	500,000			
						소계	4,560,000	
		인 건 비	인	활동가급여	7,200,000	60만×12		
				용역급여	-			
			인건비	퇴직급여	3,500,000			
				4대보험	.1			
				후생기타	I			
						소계	10,700,000	
				예	경조비		300,000	
				비	기타		153,488	세금, 수수료 등
				비		소계	453,488	
	수입	25,713,488				지출	25,713,488	

<u>제5호 의안</u> 기타 안건

_	34	_
_	54	_

부 록

*정관 *회원명단

내부제보실천운동 정관

제 정: 2017년 3월 15일

1차개정 : 2018년 1월 31일

2차개정 : 2019년 2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내부제보실천운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공익을 위한 공직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활성화하고 내부제보자를 보호하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부정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 ①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 1. 내부제보의 상담, 안내와 지원 등을 통한 내부제보자 권익 보호 사업
- 2. 내부제보사건의 신고 및 조사 담당기관 및 수사기관의 공정한 처리 촉구
- 3. 공직기관, 기업체, 학교 대상 내부제보 활성화 교육 및 캠페인
- 4. 내부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 사업
- 5.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공익재단의 설립 준비와 지원
- 6.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단체와 연대활동
- 7. 그 밖의 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소재]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 1. 본 단체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 2. 회원은 일반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3. 각 회원의 가입절차와 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본 단체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 2. 본 단체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1. 본 단체의 정관 및 내규를 지킬 의무
- 2. 본 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1조[회원모임협의회]

- ① 본 단체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협의회를 둘수 있다.
-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본 단체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기구

제1절 총회

제12조 [지위]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소집과 방식]

-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안에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이상 이나 감사의 요구,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회의 소집은 상임대표 전원의 명의로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 중 연장자가 맡으며, 상임대표 불출석시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맡는다.
- ④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14조 [정족수]

- ①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회원의 과반으로 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총회의 구성원이 불출석할 경우, 출결 및 안건의 의결권을 출석 회원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권한과 의결사항]

- ①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본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 7.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 8. 감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 9. 기타 본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② 총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본 단체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위촉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책임자,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 ③ 위촉직 운영위원은 법률지원단장, 상담센터 소장 등 본 단체에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15명 내외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전원 명의로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들간의 협의로 정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감사 및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재적 1/3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단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의결에 부의할 수 있다.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1/3이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대표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및 각 위원회의 장, 법률지원단장의 선출과 상담센터 소장을 임면하고,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임명하며, 각 회원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 및 회원모임협의

- 회 대표를 인준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본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며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 ④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 ⑤ 본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책임자가 부의하는 사항
- ⑥ 본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3절 공동대표, 상임대표, 고문, 자문위원, 감사 등

제22조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 ① 공동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대표는 10인 내외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동대표 중 3인 내외를 상임대표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상임대표는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사무처를 지휘 감독한다.

제23조 [고문 등]

- ① 운영위원회는 내부제보활동 및 사회투명성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한 전직임원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10명 이내의 상임고문을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내부제보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상임대표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법률지원단 등]

- ① 원활한 상담 및 법적 지원과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을 위해 전문가들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 ② 법률지원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상담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반조치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센터를 둘 수 있고, 상담센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면할 수 있다.

제25조 [감사]

- ① 본 단체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명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본 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위의 사실이 있거나, 감사 결과 긴급한 의결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절 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후원회

제26조 [위원회]

- ① 본 단체는 기획, 재정, 홍보, 조직, 대외협력 등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해당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회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자 희망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활동기구]

- ① 본 단체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 및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각 활동기구는 본 단체의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28조 [사무처]

- ① 본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총장은 본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무와 일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사무에 관하여는 상임대표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며. 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 ④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무국장, 사무처장 등의 직책을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이 궐위 시 사무국장, 사무처장의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③ 사무국장과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9조 [후원회]

- ① 본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건전한 육성 발전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후원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제5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0조 [지역조직]

본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1조 [부설기관]

본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32조 [회계 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예산과 결산]

- ① 사무총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 ②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제34조 [수입]

본 단체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5장 정관개정

제35조 [정관 개정]

- ① 본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 ② 개정안은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6장 해산

제36조 [해산 사유]

본 단체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7조 [해산 절차]

-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을 결정한다.
-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8조 [잔여 재산의 귀속]

본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7장 보 칙

제39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대표단, 사무총장, 각 위원회의 장이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 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본부의 주요 직책을 맡거나 상임 선거운동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의 권한이 정지되며 선거활동 종료 이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복귀할 수있다.

제40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명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월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수입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 ③ 기부금은 사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제41조 [준용 규정]

-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정관은 2017년 1월 16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2018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2019년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까지 단체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 및 창립총회의 의결, 준비위원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u>내부제보실천운동 회원명부</u>

곽태호	김준	안천식	정미현
고혜영	김태빈	양시경	정유진
권승구	김현진	오현석	정현경
권오영	김형남	유인정	조대희
권희청	김희정	유혜림(리유)	조동규
김기홍	류수연	이경애	조성강
김도리	문성훈	이도희	조승현
김명환	박광서	이대인	조재현
김미덕	박오복	이민경	전순남
김민규	박종린	이상훈	진웅용
김상균	박헌영	이석만	차성복
김서중	박현배	이승균	최현주
김성환	배병태	이영이	최홍범
김연숙	배현봉	이종인	하윤옥
김영미	백수인	이지문	하인숙
김영수	백찬홍	이지윤	한경호
김영숙	석지관(박건)	이춘미(안젤라)	한만수
김영인	송병춘	이탁연	한은영
김은영	신광식	임미리	허태곤
김이슬	신현철	전경원	허정아
김주언	안종훈	정미현	황성연

